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9일, 서명옥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2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5.1.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8.20.) 상정, 의결(수정가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전체회의(2025.8.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서명옥의원)

최근 온라인플랫폼 등에 의한 미신고 숙박업소의 중개가 무분별하

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르면 숙박업 이용자들의 안전, 보건, 위생 등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엄격한 숙박업 신고 절차와 운영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한 업장에 대해서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이 경우 미신고 숙박업자를 중개한 온라인플랫폼 등에 대한 처벌규정 부재로 인해 온라인플랫폼 등은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고 있어 온라인플랫폼 등의 불법행위 중개는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

이에 온라인플랫폼 등 미신고 숙박업 영업 중개 금지 등의 근거를 마련하여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미신고 영업의 유통을 방지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현행 「공중위생관리법」은 공중위생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도록 하고,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숙박업 영업을 한 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불법 미신고 숙박업소가 이용되고 있고, 이로 인해 이용자들의 안전·위생관리상 위험 우려가 제기되고 있

으나, 적발 시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처벌만 행해지고, 온라인 플랫폼 운영자에 대해서는 별도의 처벌 규정이 없어 불법 숙박업소 이용 중개가 근절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음.

실제 온라인 플랫폼에 위치만 대략 파악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정보만 안내하고, 숙소 주소·상호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경우가 많아 아파트·오피스텔 등 공동주택에서 미신고 숙박 영업을 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음.

참고로 서울특별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에서 온라인플랫폼을 통해 중개된 미신고 숙박업소 적발건수는 2022년 7건이었던 반면, 2023년 52건, 2024년 115건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

개정안과 같이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미신고 숙박업소에 대한 중개 금지 의무를 부과하고 위반 시 처벌 규정을 마련하는 경우, 온라인플랫폼을 통한 무신고 불법 숙박업 거래를 방지하는데 긍정적인 효과가 있고, 나아가 숙박업소 이용자의 위생과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첫째, 적용 법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소비자 보호를 위한 통신판매중개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통하는 것이 효율적인 측면이 있으나, 국민의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위험 예방이라는 공익적 측면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과 같은 개별법 개정을 통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판단이 있어야 하겠음.

참고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제30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10조) 등 소비자제품의 안전에 관한 일부 법률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제품안전성 확보를 위해 안전 확인 표시 없는 제품 판매 금지 등 직접적인 금지나 주의의무를 규정하고 있기도 함.

둘째, 개정안에서는 제안이유에서 ‘미신고 숙박업소’의 판매 중개를 금지하려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개정문에서는 목욕장업·숙박업·미용업·이용업·세탁업 및 건물위생관리법을 포괄하는 ‘미신고 공중위생영업’에 대한 판매 중개를 금지하고 있어, 해당 범위의 적절성에 대한 추가적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보임.

아울러, 현행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는 통신판매중개(업)자의 의무와 책임으로 i)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할 것, ii)통신판매의뢰자의 성명·주소·전화번호 등의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음. 이는 통신판매중개업자가 통신판매의 거래 주체가 아니며 그로부터 발생하는 책임이 통신판매자와 다름을 소비자에게 알림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취지임.

또한,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통신판매의 당사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아니한 경우 통신판매중개의뢰자와 연대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을 뿐, 별도의 처벌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판매중개 대상과 관련된 진위확인이나 적법여부 확인 등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

지 아니함. 이는 전자상거래 특성상 통신판매중개자에게 중개 대상 상품을 일일이 직접 확인하여 판매하도록 하는 일반적인 주의의무를 부여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처벌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금지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음.

참고로,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에서도 i)통신판매중개업자가 문제 제품을 인지하여 즉시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하는 등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고, ii)금지나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제재는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4. 대체토론의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현행 중개금지 대상을 미신고 ‘숙박업자’로 수정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의 특성 및 유사 입법례 등을 고려하여 벌칙 규정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하였고, 그 외 기술적 조치 등

준비기간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공포한 날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하여 수정의결함.

6. 심사결과

수정 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약간의 자구 수정이 있었음.

[붙임] 1.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5. 8.

제안자 : 보건복지위원장

수정이유

통신판매중개자등의 중개금지 대상을 미신고 숙박업자로 수정하는 한편, 전자상거래의 특성·유사 입법례를 고려하여 예외조항 및 벌칙을 조정함.

수정주요내용

- 가. 통신판매중개중개자등에게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통신판매 중개 금지 의무를 부과하면서, 영업신고증을 확인하도록 하고, 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숙박업 의뢰자가 영업신고를 하지 않았음을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등 조치를 취한 경우 예외조항을 규정함(안 제4조의2).
- 나. 미신고 숙박업자로부터 의뢰받은 통신판매 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함(안 제22조제1항).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조의2제1항 중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할 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를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경우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을 “제1항에 따른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으로, “통신판매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한다.

안 제20조제2항제2호를 현행대로 하기 위하여 삭제한다.

안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①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안 부칙 중 “공포한 날”을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수정안
<신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할 시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가 이 법에 따른 신고 절차 등을 준수하였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 ----- ----- ----- ----- ----- -----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경우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를 ----- ----- ----- ----- -----.
<신설>	② 통신판매중개자	② -----

	<u>등은 신고를 하지 않고 공중위생영업을 하는 자에게서 의뢰받은 통신판매중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u>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20조(벌칙) ① (생략)	제20조(벌칙) ① (현행과 같음)	제20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신 설></u>	<u>2. 제4조의2를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통신판매중개자등</u>	<u><삭 제></u>
2. (생략)	3. (현행 제2호와 같음)	

③・④ (생 략) 제22조(과태료) <u><신 설></u> ① ~ ③ (생 략) ④ 제1항부터 제3항 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 관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징수한다.	③・④ (현행과 같 음) 제22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 터 시행한다.	제22조(과태료) ①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 중개를 한 경우 1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 에 처한다. ② ~ ④ (현행 제 1항부터 제3항까지 와 같음) ⑤ -----제4항--- ----- ----- ----- ----- ----- -----. 부 칙 -----공포 후 1 년이 경과한 날-- -----.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중위생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경우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같은 조 제2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4조의2(통신판매중개의 제한)</u> 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 및 통신판매중개업자(이하 “통신판매중개자등”이라 한다)는 숙박업을 하는 자의 의뢰를 받아 같은 법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이하 “통신판매중개”라 한다)를 하는 경우 숙박업을 하는 자가 제3조에 따라 교부받은 영업신고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통신판매중개자등은 제1항에 따라 영업신고증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통신판매중개(통신판매중개자등이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숙박업을 하는 자를 발견하는 즉시 삭제하는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과태료) <u><신 설></u>	제22조(과태료) ①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① ~ ③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징수한다.	<u>통신판매중개를 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u>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⑤ -----제4항----- ----- ----- ----- -----.
--	---